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26 발의연월일: 2024. 11. 27.

발 의 자:김태년 · 김한규 · 박희승

맹성규 • 이훈기 • 홍기원

김태선 · 김영배 · 박균택

염태영 · 손명수 · 박홍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압류금지 품목을 규정하면서 채무자등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필수적인 경우 뿐 아니라 자기 또는 가족의 명예와 관 련한 물건이나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경우 등 물리적인 필요와 더불어 감정적, 심리적으로 주관적인 면에서 중요성을 갖는 물건도 포함함.

그런데 「민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기는 하나,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대상으로서 소유자가 반려동물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유대감을 법적,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할수는 없음에도 현행법은 압류금지 품목에 반려동물을 포함하고 있지아니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압류금지 품목에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반려동물과 「동물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반려의 목적으로 소유함을 소명한 동물을 포함함으로써 소유자가 가지는 반려동물과의 심리적 유대감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195조제 17호 신설).

법률 제 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5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 및 반려의 목적으로 소유함을 소명한 그 밖의 동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물건에 대한 적용례) 제195조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물건을 압류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u><신 설></u>	17.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의 반려동물 및 반려의 목적
	으로 소유함을 소명한 그 밖
	의 동물